



제424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시 의견청취 절차 의무화〉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에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 명시〉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24호)

2025.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제2207724호)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시 의견청취 절차 의무화 (안 제12조제2항)	3
2.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에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 명시 (안 제18조제3항)	7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220772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정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22.
3. 회 부 일 : 2025.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과 여객 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교통행정기관이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상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청취는 재량규정으로 의무사항이 아님에 따라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보행우선 구역을 설치하고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입억제용 말뚝과 같이 일부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자동차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휠체어 등도 통행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 시 교통약자 단체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지구 지정계획의 의무적 포함 사항에 시설물의 설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시 의견청취 절차 의무화(안 제12조제2항)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통행정기관¹⁾이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²⁾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할 때 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이 교통약자³⁾ 이동편의시설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이하 “기준적합성 심사”)하는 경우⁵⁾

1)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6호)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3)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4)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현행 제12조제2항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생략)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 ----- ----- ----- 들어야 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적합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호6)에서는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

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체는 해당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 시에 이동편의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의견청취 절차를 의무화하더라도 요식적 절차에 그친다면 교통약자의 참여를 통한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현행법 제25조7)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통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할 것

2.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圖書)를 제공할 것
가.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
나.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구조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청취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할 것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 2의2.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기준적합 설치현황(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로 구분)을 보면, 이동편의시설 미설치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가장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 지역 및 도 지역 모두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현황 >

(단위 : %)

대상 지역	대상연도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8개 특별·광역시	2019	79.4	4.6	16.0
	2021	81.5	5.2	13.3
	2023	84.9	4.7	10.4
9개 도	2020	72.1	8.6	19.2
	2021	73.5	8.8	17.6
	2022	75.1	8.3	16.6

※ 출처: 2019~2023 각 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보고서

나. 국토교통부 의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과정에서 교통약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에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 명시 (안 제18조제3항)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18조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⁸⁾, 개정안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시설물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② (생략) ③ 지정계획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의 위치·면적, <u>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시설물의 설치 및 그</u> <u>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 ④ ~ ⑦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보행안전시설물⁹⁾ 중 차량의 보도 진입이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Bollard)이 오히려 시각장애인이거나 휠체어의 통행을 방해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¹⁰⁾.

< 볼라드 설치 예 >



이에 개정안은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에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속도저감시설
2. 횡단시설
3.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 제1항제5호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의정부시, 보행 방해 볼라드 1천개 제거(연합뉴스, 2023.5.15.), '시각장애인의 지뢰' 볼라드..." 설치규정 안 지켜 보행 위협" (대전일보, 2023.1.11.), 점자블록 따라가다 우뚝 솟은 볼라드에 '랑'(매일신문, 2022.4.19), 안전 위협하는 볼라드 뽑는 데 '혈세 낭비'(제주일보, 2015.9.16.) 등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행 우선구역에 설치되는 볼라드 등 시설물이 교통약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에는 보행안전시설물과 관련하여 단편적으로 그 종류와 수량에 관한 사항만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¹¹⁾. 또한,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역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정계획을 확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따라서, 개정안에서와 같이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에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보행안전시설물의 전반적 설치계획을 지정계획에 담고 이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 전문가,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8조(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현황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2. 보행우선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속도저감시설 및 횡단시설 등 보행안전시설물의 종류·수량에 관한 사항
3. 보행우선구역에서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4. 보행우선구역에 설치된 도로 점용물의 이설계획에 관한 사항
5. 보행우선구역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물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6. 보행우선구역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④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정계획을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확보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행우선구역 지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2014년 이후로는 지자체의 보행우선구역 지정 실적도 없는 상황임. 이는 2012년 2월 22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보행자 우선도로’(2022. 1.11. 근거규정 신설)에¹³⁾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1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
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계획을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에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의 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의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뿐 아니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자우선도로 비교 >

구분	보행우선구역	보행자우선도로
내용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정주체	시장 또는 군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내의 군 제외)
절차	지정계획안 마련→관계 행정기관 협의→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지정계획 확정·고시	조성계획안 마련→관계 행정기관 협의→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조성계획 확정·고시
계획의 내용	보행우선구역의 위치·면적 교통현황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물의 종류·수량 보행자 안전·편의를 위한 조치계획 도로 점용물 이설계획 불법시설물 정비계획 필요한 예산	(관련 규정 없음)
시설물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등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주정차 억제시설, 장애인 안전시설, 조경시설, 편의시설, 조명시설 등

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한편, 개정안에 규정된 ‘시설물’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모든 시설물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이므로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행안전시설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직접 “시설물 설치”를 보행우선 구역 지정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4